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방법	장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2020.08.20 (목)	인터넷 청약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 '청약홈'</li> </ul>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0.08.28.(금)</li> <li>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li> <li>*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0.09.01.(화) ~ 2020.09.06.(일) [7일간] (10:00 ~ 16:00)</li> <li>장소 : 당사 견본주택 T:052-260-441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0.09.08.(화) ~ 2020.09.10.(목) [3일간] (10:00 ~ 16:00)</li> <li>장소 : 당사 견본주택 T : 052-260-441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li> </ul>
<p>※ 당사홈페이지(http://더샵번영센터로.com)에서 선착순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가능 일정은 당첨자에 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8.10.(월)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li> <li>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 됨.(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3조 6호)</li>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53조 9호)</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이내</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li> <li>*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li> <li>*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li> <li>※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li> </ul>

##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75A	75B	84	합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0	0	1	3	6